



## 결정서

사건 : 2016-641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REDACTED]

소속 : [REDACTED] 대학교 직위 부교수

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변호사 오범석, 강민정

피청구인 : 학교법인 [REDACTED]  
[REDACTED]

심사일 : 2016. 11. 23.(출석)

결정일 : 2016. 11. 23.

피청구인이 2016. 8. 31. 청구인에게 한 면직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6. 9. 22.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피청구인이 2016. 8. 31. 청구인에게 한 면직 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 1.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1992. 3. 1. [REDACTED] 대학교 일어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1995. 4. 1. 조교수로, 2000. 4. 1. 부교수로 각 승진하였다.

나. 청구인의 소속학과는 1992년 일어과, 2000년 관광통역전공과, 2001년 관광일본어, 2011년 국제통상일어과, 2013년 한일비즈니스과로 변경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3. 5월 청구인이 소속된 한일비즈니스과와 한중비즈니스과를 통합하여 국제통상과를 신설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전공전환신청을 받아 2014. 1. 13. 청구인의 소속을 국제통상과로 변경하였다.

라. 2014. 5.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된 국제통상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5. 1. 13. 학칙 개정안을 사전 공고하고, 2015. 2. 13.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및 2015. 2. 26. 교수회의의 심의를 각 거쳐, 2015. 3. 1. 국제통상과를 폐과(학칙 개정)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5. 11. 26. 피청구인에게 유통경영과로의 전공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2016. 1. 18. 및 2016. 1. 25. 피청구인은 교원전공전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전공전환에 대해 심의(전공전환 불가)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6. 7. 19.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2016. 7. 20. 동부산대학교 총장의 제청, 2016. 8. 19.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6. 8. 31.자로 청구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하였다.

## 2. 처분 사유

전공전환 불가로 인한 「사립학교법」 제56조 및 「학교법인 설봉학원 정관」 제44조 적용으로 2016. 8. 31.자로 면직됨을 통보합니다.

## 3.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일본어를 전공한 한일비즈니스과 소속 교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한일비즈니스과와 한중비즈니스과를 통합하여 국제통상과를 신설하는 피청구인의 결정에 따라 국제통상과 교수로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제통상과 등록인원이 정원(30명)에 못

미치는 21명이 되자 정원을 20명으로 조정하였고, 2014년도에 국제통상과를 신설되자마자 폐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학교법인 [REDACTED] 정관」 제42조 및 「교원 전공전환에 관한 규정」은 폐과된 교원의 경우 2년 동안(1년 추가 가능) 전공전환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유통경영과로의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국제통상과 폐과로 인한 면직 처분을 하기 전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청구인의 임용 형태, 업무 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 기준을 정하였어야 한다.

마. 전공전환과 관련하여 배치예정학과인 유통경영과 교수 전원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전공전환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법하다.

#### 4. 판단

가. [REDACTED] 대학교 폐과 면직 관련 규정

「학교법인 [REDACTED] 정관」

제42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으로 학과소속이 상실된 자

⑤의2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는 2년 이내의 전공전환 기회를 부여하며 전공전환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⑨ 제5의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전환 명령을 받은자가 그 기간 중 전공전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학교장의 제청을 받아 임면권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교원 전공전환에 관한 규정」

제3조(전공전환 절차) 전공전환 대상교원의 전공전환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학과 구조조정으로 학과 폐지(결정)가 되면, 소관부서장은 전공전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② 전공전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배치예정학과 소속 교수 전원의 의견을 들어 배치학과를 결정한다.<sup>1)</sup>

③ 전공전환 대상자는 반드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여 전공전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직위해제 및 해임) 전공전환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 총장은 정관 제42조에 의해 임용권자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을 제청하여야 한다.

① 전공전환 대상자로 결정된 후 전공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 전공전환 대상자가 전공전환 교육이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전공전환 대상자 전공전환 교육 후 관련 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 나.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적법 여부

1) 「현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 제53조 제3항, 제57조 제3항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1호, 제3항 등에 의하면, 사립대학이 학급·학과를 폐지하고 그에 따라 폐직·과원이 되었음을 이유로 교원을 직권면직 할 때에, 학교법인 산하의 다른 사립학교나 해당 학교의 다른 학과 등으로 교원을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함으로써 면직을 회피하거나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1) 2015. 2. 25. 개정된 부분. 개정 전에는 배치예정학과 학과장의 의견을 들어 배치학과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음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이고, 사립대학의 사정상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같은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217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6607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이 교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서는 교원의 신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도 당해 학교법인의 다른 학교 및 학과 설치 여부, 면직대상 교원의 전환대상 학교 및 학과 교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 전환대상 학과의 교과과정, 개설과목, 강의실태 및 면직대상 교원의 학위, 전공, 실무능력, 강의경력 사이의 관련성 등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① 청구인의 소속학과가 일어과, 관광통역전공과, 관광일본어과 등으로 변경되어 왔는데, 피청구인이 운영하는 동부산대학교에는 ‘호텔관광과’가 설치되어 있는 점, 나아가 청구인이 이 사건 면직 처분을 받기 전에 ‘유통경영과’로의 전공전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실제로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에서 실시한 ‘무역관리사 준비과정’을 수료하는 등 전공전환을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면직 처분 당시에 청구인에 대한 전직발령 내지 배치전환 등에 의한 교원의 면직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청구인의 임용형태·업무 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소속된 국제통상과가 폐과된 후, 청구인이 전환을 신청한 학과 소속 교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바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을 한 위법함이 있다. ② 또 청구인의 전공전환에 대해 심의한 2016. 1. 18.자 및 2016. 1. 25.자 교원전공전환 심사위원회의 회의록과 2016. 7. 19.자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청구인이 신청한 전환대상 학과(유통경영과)의 교과과정, 개설과목, 강

의실태 및 청구인의 학위, 전공, 실무능력, 강의경력 사이의 관련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의한 자료는 찾을 수 없고, 단지 청구인이 전공전환을 신청한 유통경영과 소속 교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의 전공전환이 불가하다고 심의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한편 동부산대학교 「교원 전공전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공전환과 관련하여 배치예정학과 소속 교수 전원의 의견을 들어 배치학과를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배치예정학과 소속 교수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전환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유통경영과 소속 교원들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청구인을 유통경영과로 전환배치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2016. 7. 1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2017 판결 참조), ③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설봉학원 정관」 및 동부산대학교 「교원 전공전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전공전환 대상 교원에 대해 2년의 전공전환 기회(1년 추가 가능)를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국제통상과 폐과 이후 청구인에게 2년의 전공전환 기회 혹은 교육기간을 부여하지도 않았다.

4) 결론적으로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청구인에 대한 면직 회피가능성 혹은 전환배치 가능성의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임용형태·업무실적·직무수행능력·징계처분사실 등을 고려한 면직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면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위법하다.

##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위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1. 23.

교 원 소 청 심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이근우 이근우

상임위원 류정섭 류정섭

위 원 박범덕 박범덕

위 원 김효신 김효신

위 원 손종학 손종학

위 원 지희순 지희순

위 원 오행자 오행자

위 원 우찬제 우찬제

위 원 박용표 박용표



위 정본임.

2016. 12.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